직제규정

제정 2015.09.01. 규정 제 1호
개정 2015.12.15. 규정 제 35호
개정 2016.09.21. 규정 제 56호
개정 2017.11.14. 규정 제 78호
개정 2018.02.14. 규정 제 84호
개정 2018.03.27. 규정 제 87호
개정 2018.12.27. 규정 제 95호
개정 2019.02.07. 규정 제 96호
개정 2019.10.31. 규정 제101호
개정 2020.01.15. 규정 제111호
개정 2020.07.03. 규정 제121호
개정 2021.01.01. 규정 제138호
개정 2021.12.07. 규정 제153호
개정 2021.12.31. 규정 제1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관광공사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제에 관하여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사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삭제 〈2016.09.21.〉

제5조(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제6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본부장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상임이사의 직책과 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2.14.〉

제7조(직무대행) 삭제 〈2016.09.21.〉

제8조(직원) 직원은 일반직 및 공무직으로 구분하며, 일반직의 직급은 1급에서 7급으로 한다. 해당 직급별 직위, 직책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제8조의2(직무대행) ① 사장 또는 본부장 등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31.〉

1. 사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사장을 대행한다.
2. 사장과 본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기구 순위에 따라 해당 부서장(실장, 단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신설 2016.09.21.〉 〈개정 2019.10.31.〉

제9조(자문위원) 공사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09.21.〉

[제목변경] 〈2016.09.21.〉

제3장 조직

제10조(기구) ① 공사에는 1본부, 3실, 1사업단을 두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02.14., 2018.12.27.〉

②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조직으로 팀을 두며, 세부사항은 직제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09.21., 2018.02.14.〉

③ 삭제 〈2018.02.14.〉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은 팀(단) 내 P/L(Part Leader) 또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9.21.〉

1. 팀 인원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개정 2016.09.21.〉〈개정 2019.10.31.〉
2. 팀 내 이질적인 기능이 혼합되어 통합 관리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9.21.〉〈개정 2019.10.31.〉
3. 별도의 사무실(원격지 등) 운영 또는 교대 근무 등 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관리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9.21., 2019.10.31.〉
4. 독립된 팀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6.09.21., 2019.10.31.〉
5. 기타 특정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특정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P/L(Part Leader)은 도입 취지·목적에 맞게 팀(단)장의 권한 일부를 P/L에게 위임하며, 위임의 범위 및 내용은 사장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09.21.〉

제11조(직위) 삭제 〈2018.02.14.〉

제12조(정원)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10.31.〉

② 삭제 〈2016.09.21.〉

③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공무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④ 사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6·7급 직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제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19.10.3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에 따라 충원된 신규채용인력은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6.09.21., 2018.03.27., 2018.12.27. 2019.10.31.〉

제4장 업무분장

제13조(업무분장) 공사의 실·단의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직제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09.21., 2017.11.14., 2019.10.31., 2020.07.03., 2021.01.01.〉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2호, 2015.09.01.〉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 2015.12.15.〉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2016.09.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호, 2017.11.14.〉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2호, 2018.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정비)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다른 사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구명칭 및 직위 등이 이 규정에 의한 기구명칭 및 직위 등과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 중 해당 기구명칭 및 직위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6호, 2018.03.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8호, 2018.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3호, 2019.02.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호, 2019.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 2020.01.15.〉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6호, 2020.07.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3호, 2021.0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5호, 2021.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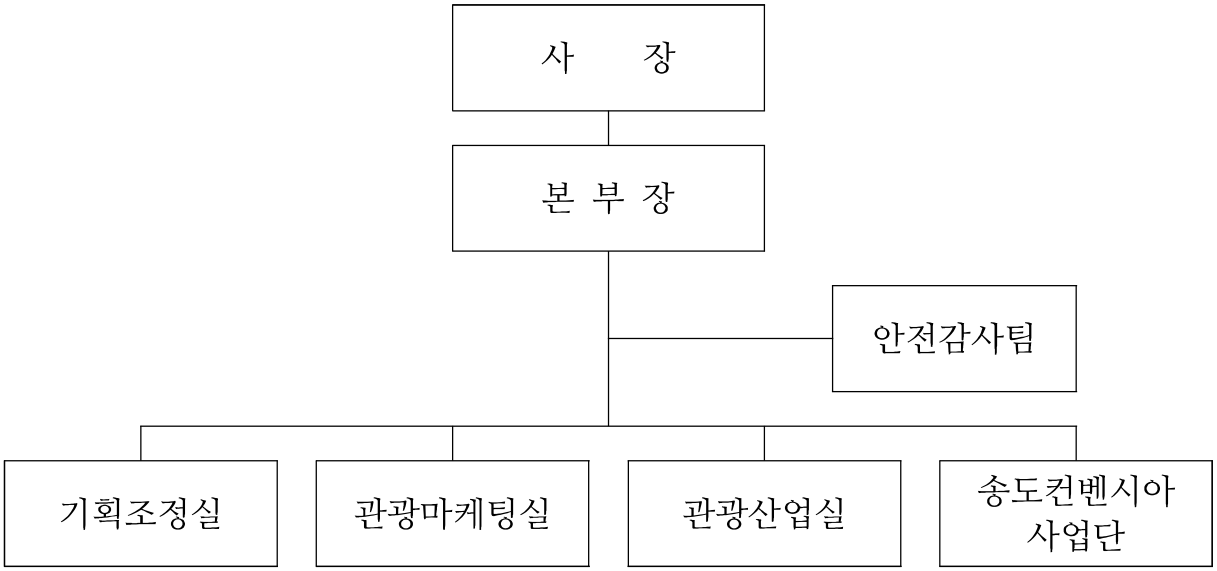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6호, 2021.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0조제3항 관련) 〈개정 2015.12.15., 2016.09.21., 2017.11.14., 2018.12.27., 2020.01.15.〉

기구표



[별표 2] (제12조 관련) 〈개정 2016.09.2., 2018.02.14., 2018.03.27., 2019.02.07., 2020.01.15., 2021.12.07.〉

정원표

(단위 : 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22	2	1	3	15	22	33	24	22

[별표 3] (제13조 관련) 〈개정 2016.09.21., 2017.11.02., 2018.12.27., 2020.01.15., 2020.07.03., 2021.01.01. 2021.12.31.〉

업무분장표

실·단	업무분장 내용
기획조정실	· 전략기획, 조직, 평가, 예산 등 경영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인사, 노무, 총무, 회계결산, 계약, 지출 관련 업무 · 관광정책개발 지원 및 언론홍보
관광마케팅실	· 인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 개발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시행, 국제회의·인센티브 단체 유치 및 MICE 행사 개최지원
관광산업실	· 인천관광 수용태세 개선,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 ·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개발 및 운영,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진흥활동, 관광 일자리 창출 및 관광기업지원
송도컨벤시아사업단	· 송도컨벤시아 자산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 · 전시·컨벤션 유치 마케팅, 자체 전시회 개발 및 운영
안전감사팀	· 재난·안전관리 및 윤리·인권경영 활동 · 법무 및 내·외부 감사총괄